

1. 개정이유

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·시행 중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(안 제23조제1항)

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한국자활복지개발원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

나. 인권교육 실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(안 제23조제5항)

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방법, 교육기관 지정 절차, 교육 경비 등 상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. ~ 2024. 1. .) 결과,

3) 행정규제 :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
2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
4.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·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-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방법,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인권교육의 실시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인권위원회”라 한다)가 실시한다.	제23조(인권교육의 실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.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·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② ~ ④ (생략)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.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방법,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